[UCI]I804:24011-200000234878

2005年 2月
교육학석사(일반사회전공)학위논문

전자상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하 연 실

전자상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to Electronic Commerce

2005年 2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하 연 실

전자상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영 곤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年 2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하 연 실

하연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梁東魏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在亨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英坤 (인)

2004年 12月 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Ⅱ.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 ····· 5

1. 전자상거래의 개념 ····· 5
2.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 ····· 7
   1) 계약의 주체 ····· 7
   2) 의사의 표시 ····· 8
   3) 청약의 유인 ····· 11
   4) 계약의 성립 ····· 12
   5) 전자상거래와 보완 ····· 16
   6) 전자상거래와 전자인증 ····· 19

Ⅲ.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례 ····· 23

1. 영미법계 ····· 23
2. 대륙법계 ····· 25
   1) 독일 ····· 25
   2) 유럽연합(EU) ····· 27
   3) 일본 ····· 29

Ⅳ. 전자상거래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 31

1. 전자거래의 기본법 내용 ····· 31
2. 전자거래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 ····· 32
3.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제도 ····· 35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1

1. 전자거래의 계약의 유효성의 인정기준 ····· 41
2. 인증서의 발급기관 ····· 42
3.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 44

Ⅴ. 결론 ····· 45

참고문헌 ····· 48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to Electronic Commerce

Ha, Yean Sil
Advisor : Prof. Kim, Young Gon
Maior in General Soci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person, who use computer, there are on the increase trade using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But the electronic commerce using open system on the internet, therefore the electronic commerce were exposed in weak point as the secret informations, safety and preservations of public security.

Especially, there are exposed to the risk, when input the personal information go through the process a settle as the pay the price on the internet.

In this way, there are exist the point at issue, in relation to the electronic commerce, as the certification of electronic expression of one′ intention, carry out the contract issue time and method, a validity of the electronic papers and as the electronic money payment means.

We were investigation of the applications in electronic commerce laws in various countries using these ways. And improvement in our nation′s electronic

commerce act adequately according as the international trend, consequently.

This study was to solve the legal problem go through the occur of the electronic commerce, and investigate the case of legislation on the each countries and discussion item 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n compared with in our country.

And investigation the laws for suitable international trends, make a through revision the electronic commerce of the contract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tract, and ultimately the purpose of the safety and activity in electronic commerce.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conduct the pursuit of development of the economic in our stagnant economy and increase of the exportation income, using introduce of the public security method and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commerce system, in the leading countries for more safety and practical use in electronic commerce.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에 들어와 컴퓨터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는 과거의 상거래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전자상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비대면거래로 이루어지고, 요식화·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컴퓨터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거래정보를 주고받을 수만 있으면, 국경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색이다.[1]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 거래는 세계를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 수 있었고 국가간의 무역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생산과 시장의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화의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 전자 상거래는 세계 각국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전자 상거래의 범세계적인 확산은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사용 인구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의 발달과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인터넷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 거래의 엄청난 잠재 수요를 고려한다면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질서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의 거래의 개방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기밀성이나 무결성 또는 진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가지는 무한한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중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회수할 수 없을 지

1) 유동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과 전자적 이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2001. 2면.

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고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바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지급결제수단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성장은 아울러 이에 맞는 규범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환경에는 전통적인 법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국내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전자신문 등록일 2004/1/14(수) 조회한 결과 작년 전자상거래 규모 238조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전체 상거래 가운데 17%인 238조원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또 계속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법 이론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도 전자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는 통신판매의 일종이기는 하나 기존의 통신판매에 관한 이론들은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법률행위와 이행방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자회로의 변화가 기존의 전통적인 법적 본질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의사표시의 유효시기, 계약체결의 시점 등 의사표시의 기술화에 따라 검토를 요하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그리고 전자 상거래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 외에 전자적 의사표시의 인증문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시기 및 방법의 문제,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전자서명의 서명성 및 그와 관련된 문제, 새로운 대금지급수단으로서의 전자지급제도 등 기존의 법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전통적인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도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거래과정 또는 거래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기존의 법령·규제를 재검토하여 국제적

2) http://www.netsarang.org/technote/read.cgi?board=com...&y_number=210&nnew=2-

흐름에 적합한 법률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법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규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들은 거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부분 공공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99년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법체계상 일관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상의 불비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논의한 사항과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법령정비를 제정비하고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법 이론들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검색부터 배달에 이르기까지 상품선택→거래요청→확인요청→거래인증→거래요청승락→대금지급요청→대금지급완료→배달이라는 8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3].

이처럼 전자상거래가 상품 검색에서 배달까지 이르는 일련의 거래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 중에서 특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전자 상거래의 보완 문제와 전자서명, 전자인증 문제에 있어서 다른 외국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의 입법례 그리고 국제기구와 각국의 입법상황 및 우리나라 입법상황을 검토하여 우리의 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있어

3) 현인보,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 2면.

서 안전성 확보 및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제도등을 중심으로한 법적 규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더욱 활성화된 전자상거래를 모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1장은 서론에서의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구성하고,

제2장은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정의하고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법률관계에 관해서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법적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술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법제 동향을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종합·정리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국제기구에서 논의한 사항과 이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과 비교·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Ⅱ.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

1. 전자상거래의 개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89년 미국 국방성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으며, 1993년 미국 연방 정부의 구매·조달 프로그램에서 이 용어를 채택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4]

전자거래(Electronic) 또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과 무관하게 정보기술을 통한 문서가 없는 환경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로 기업간의 거래 (business-to-business interaction)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으나,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즉, 웹기술이 출현하면서부터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는 기업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국가와 기업 또는 개인의 거래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5]

그리고 전자거래기본법[6]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전자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4호). 즉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팩스(Fax), 전자우편(E-mail),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자금이체(EFT)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일본 우정성의 1997년 통신백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정보통신 네트워크내에 비즈니스 공간이나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여 그 속에서 일반소비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각종 단체들의 거래나 상호교류를 실현하는 것들을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7] 또한 일본 ECOM(Electronic

---

4) 정주환, 전자상거래법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32면.

5) 전자기본법의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2~4면.

6) 전자거래기본법은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이상의 의원 등이 제출한 대체안이 1988, 2. 8. 제정·공포되어 1999. 7. 1.부터 시행되었다.

7) Michael N. *Gualtieri, "Turning the EC Vision into Reality"*, EDI World, November 1996,

Commerce Promotion Council or Japan ; 전자상거래촉진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네트워크상에서 상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8] 한편, 미국의 UCC 제 2B편에서는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계약 성립의 일반적 단계로서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전자 메시지로써 행해지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OECD는 '문자, 소리, 시각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한 정보의 전송,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UNCITRAL 모델법에 의하면 EDI는 '합의된 정보구성의 표준을 이용하여 행하는 컴퓨터간의 정보의 전자적 전송'을 말한다.[9]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널리 확산되고 있으면서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뚜렷이 정립되지 않았지만 결국 위와 같은 대부분의 정의들이 일반적으로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상거래라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비디오·음성 등과 같은 비전형적인 데이터를 비롯하여 CAD/CAM과 같은 생산 및 기술데이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각종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교환, 인터넷, 전자우편, 팩스, 바코드, 데이터베이스, 전자게시판, 전자양식, 전자지급 등 다양한 정보기술이 통합적으로 활용된다고 할 것이다.[10]

일반적으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라는 용어 대신 '전자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 상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주체간의 거래행위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전자거래는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거래이지만 반드시 상거래에 한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의 거래나 순수한 민간거래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자거래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거래의 대부분이 상거래

18면. 전현우, '전자상거래상활용상의 법적 제문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5면에서 재인용.

8) 전현우, 상게논문, 9면.

9) 전현우, 상게논문, 6면.

10) 문희철· 심상렬, 무역자동화와 EDI, 무역경영사, 1988, 467면.

이므로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대부분 사용있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란 재화와 용역 대금지급 등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모두가 전자데이터의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일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전자거래의 법률관계

1) 계약의 주체

전자거래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이고, 특정인이 전자통신망에 접속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전제가 된다.[11)]

이러한 전자거래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이므로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는 권한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일 것이다. 전자거래의 경우 실제로 정보를 입력하는 자가 무능력자인지 무권대리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즉, 무능력자의 부모의 동의없는 상거래 행위를 민법의 일반 규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따르고 본인의 허락없이 해킹에 의한 거래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는 ID와 패스워드의 관리 등, 전자데이터의 명의인의 진위 여부의 문제에 관하여 민법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행위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이 행위가 실제로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였는가에 대한 진위도 밝혀내기 어렵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형식의 문제, 누가 시켜서 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 주체에 따른 명확한 법적

---

11) 윤연근・김형진・신문걸. [전자상거래관련법규], 경기도 파주, 기한제, 2003. 13면.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쌍방의 안전성 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인터넷의 기술적인 면을 보완하여 그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 주체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를 달리하거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거래의 주체 즉 계약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는 가장 일반적이며 현실적인 분류이다. 이러한 분류는 민·상법이라는 적용법규의 차이 이외에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분류법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를 경우 동일한 방식의 전자거래에도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상이하며, 이러한 점은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법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의 한계가 될 것이다.[12] 계약의 주체에 따른 분류로 첫째 기업간의 전자거래와 기업과 개인간의 전자거래와 개인간의 전자거래 그리고 정부와 소비자간거래, 정부와 기업간 거래와 기업내부 프로세스의 혁신 통한 기업내 거래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형태가 있으며, 특히 정부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2) 의사의 표시

모든 계약은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는 마우스 버튼을 잘못 클릭하거나 본인 아닌 제 3자의 의사표시 또는 무능력자의 의사표시 컴퓨터의 오작동등 의사표시의 하자나 컴퓨터의 기계적 오류와 같은 문제를 다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적적으로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

12)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30면.

일반거래에서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의사의 불일치로 성립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비대면 거래이고 컴퓨터의 버튼 하나의 작동으로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거래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안정적인 전자상거래법규 또는 약관을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거래에 있어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어 거래를 행하는 무권대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론상 본인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인터넷 사이버 몰 이용표준약관'의 경우 정보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사이버 몰이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이버 몰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전자 거래에 관련된 은행 약관에서도 본인의 계약자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거래의 성립은 물론 법적인 효력까지 본인에게 귀속되어 다소 이용자에게 불공평한 규정과 약관들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불공평한 약관과 규정들 그리고 전자데이터 전송시 에러는 컴퓨터 프로그램회사에서 책임질 것인가 사용자나 사업자 또는 은행이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은 없는가?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되고 대책을 세우고 문제가 있는 약관과 법규가 있으면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통신에 의한 거래에서는 네트워크상에서 패스워드 등 본인의 인증을 위한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3자가 본인을 사칭하여 명의인인 본인이 행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외관으로 전자 데이터를 발신할 수도 있다. 이를 수신자측에서 보면, 본인인지, 제3자의 사칭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전혀 실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규약과 기본계약을 근거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권한없는 거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네트워크에 가입하거나 사이버몰에서의 거래를 위한 회원이 되기 위한 가입을 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유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 데이터의 송수신에 의하여 개개의 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가맹계약의 시점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자에 의한 가맹계약의 체결도 비교적 성행되는 현상도 있다. 그러나 가맹계약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체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유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신용카드의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며, 개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동의나 승낙도 행해진다는 생각은 무리이다. 따라서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행위무능력의 경우에는 따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약관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도 그 규정은 무능력자에 관한 민법의 강행법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본다.[13] 이 밖에도 전자데이터의 전송시의 에러, 부도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사표시의 하자의 경우에, 표시상의 착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한 전자거래에서도 민법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취소와 무효의 문제 등이 중요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립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기와 장소 등이 중요성을 갖게 되겠지만 의사표시가 취소가능한 경우에는 전자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자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취소나 무효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3) 松本恒雄, 新版註釋民法(13), 有斐閣, 1996, 262면.

3)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을 알기 위해서는 청약의 개념부터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청약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하나로 상대방에 대하여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14] 다시 말하면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으로 곧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요하는 계약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꼭 그것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거래 상대방의 구두, 서신, 전화, 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등의 수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을 해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거래의 권유를 말하며 청약의 개념과 구별되지만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승낙이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에 대하여 기존의 민사법이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確定的 拘束意思(Bindungswille)를 구별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확실한 거래조건의 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5] 이것은 결국 의사표시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의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 및 관습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수령인이 인터넷사이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또는 거래관행을 고려한 판단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상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나 선전이 중심이 되어 특정 상품과 용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미 사용자의 아이디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아이콘만 누르면 주문이 가능한 상태로 나온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으

---

14) 신승보, “전자상거래의 성립 단계에서의 법률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75면.

15)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999, 872면;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2, 85면.

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에 인터넷상에서의 사업자가 즉시 아이디, 비밀번호, 크레디트카드 번호를 입력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전자거래에 있어서 일방이 확정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은 그 내용을 수용할 것인가의 판단만을 하는 경우도 거래조건의 제시와 계약체결과의 근접한 정도면에서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16]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있어서도 결국 거래당사자와 관련자의 정직, 성실, 책임감에 따른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공평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약관 및 법규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4) 계약의 성립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네트워크 시스템의 확산에 따라 전자거래의 특징으로 계약체결과정이 사업자가 마련하고 주도하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새롭게 등장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전자 거래에서도 사업자는 이런 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위해 약관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약관에 의해 전자거래계약의 대부분이 체결되어지므로 인해 약관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전자거래계약은 모니터상에서 나타나는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소비자는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I agree)'버튼을 무조건 클릭하게 되어 일반거래에서의 서명보다 훨씬 경솔하게 계약체결을 할 위험이 있기도 한다.[17] 이러한 점에서 약관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입법된 현재 시행중인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는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

16) 오병철, 전게서, 287면.

17) 한웅길, 전자상거래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 동아법학, 제 2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12면-13면.

회에서는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 약관(이하 약관 표준약관이라함)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러한 표준약관이 제정됨으로 인해 많은 사이버몰은 표준약관을 거의 그대로 사이버몰의 약관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표준약관이 미비하거나 그 법규정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실제 거래계에서 많은 법률분쟁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계약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시기를 단순히 클릭버튼을 작동하여 전송이 시작되었을 때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컴퓨터에 전송한 내용이 도달했을 때인가 또는 상대방이 이 정보를 접하였을 때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민법의 논의와 연결하여 보면, 계약의 성립시기를 민법의 경우에는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로 기준을 삼지만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단순히 의사표시의 시기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에 송신된 것으로 보고 있다(법 제9조 ①).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는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행해진 데이터의 송신은 수신확인의 도달시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동 모델법 제14조). 전자거래기본법 제12조 제②항도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태도는 도달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무효에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절대적 무효 사유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적질서의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전자거래에서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 전자거래는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 무효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는 비진의의사표시의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 등이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무효 사유가 존재하게 된다면 전자거래는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민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에서 절대적 무효와 구별되는데 이런 선의에 대하여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8] 대부분의 거래가 그렇듯이 전자거래 역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처럼 약관에 의한 전자거래에 특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무효사유는 약관 규제법에서 그 무효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약관규제법의 논의 역시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전자거래에서는 기존의 무효에 관한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하겠다. 그 밖의 무효와 관련한 무효행위 추인의 문제, 무효행위 전환의 문제 등도 전자거래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19]

여기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전자거래에서 도구로서 컴퓨터가 이용되는 경우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무효 행위의 추인과 전환은 컴퓨터이용자의 사후적인 인지에 의해서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계약의 무효와는 다른 맥락으로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어떤 사유에 의해 그 효력을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취소가 있다. 계약의 취소는 무능력자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거나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경우에 있게 된다. 취소사유 중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거래는 행위무능력자에 의해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라는 점이다. 따라서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전자거래의 다른 상대방에 대한 정보취득 역시 전적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일성 및 행위능력의 판단이 쉽지는 않다. 즉 동일성이나 행위능력의 판단은 주민등록번호입력 이외에는 행위무능력을 가려낼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방법이 불

18) 대법원판례, 1970.9.29, 70다406.

19) 신승보, 전게논문, 67면.

완전하다고 보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신속성을 요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또한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쉽지 않는 문제이다.

다만, 행위무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에 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결방법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컴퓨터이용자의 의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무능력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쌍방간에 손해와 책임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계약체결시의 책임에 관하여 제 535조 제1항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써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체결상의 책임이론구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전자거래를 달리 취급해야할 특수성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형별로 검토하는 일반적인 설명방법을 따르되 전자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20]

이러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취소, 무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을 보았다. 민법 제 535조의 경우와 같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전자거래의 기술적인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몰을 이용한 이용자의 입증책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은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의 이행에는 "오프라인형"과 '온라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형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은 종래의 계약의 이행과 유사

20) 신승보, 상게논문, 70면.

하여 법적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온라인형" 계약의 이행은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데이터 송신의 도중에 통신시스템의 장애 또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데이터 시스템 장애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 내지는 적극적 채권침해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법적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5) 전자상거래와 보안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비대면 거래이고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정보의 보안 및 거래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해커들의 홈뱅킹 침해 사례는 물론 시스템 장애 및 프로그램 오작동에 의한 에러, 거래자의 실수,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의 계약체결과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유출에 의한 경제적 법적 침해 사례, 그리고 거래회사의 잠적과 거래 당사자의 신용불량에 의한 비의도적 지급불능상태 또는 의도적 지급거절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 많은 문제 중에서 여기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보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해커들의 홈뱅킹 침해 사례와 시스템 장애 및 프로그램 오작동에 의한 에러는 전자상거래의 보안과 안정성에 있어서 걸림돌로 등장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거래의 안전성이 침해당하는 때에도 컴퓨터해킹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발생의 위협은 물론 사후 구제수단에 대한 불신감까지 갖게 하는 것이다.[21]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에 있어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민·형사법상의 법리밖에 없는 것이

21) 정진근, "인터넷 전자거래를 위한 지급결제수단의 법적 성격 및 정비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0, 73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보안과 거래의 안전성을 위한 통일적이고, 현실에 맞는 법제도의 마련[22]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안의 책임 주체는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될 것인데, 이러한 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통신망사업자가 보안에 관해 어떠한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는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받아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통신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다.[23] 즉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개키 기반구조와 암호화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등이 거래계에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 때 암호화 내용은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 정책에 대한 OECD의 지침은 암호화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암호화 방식의 선택, 시장환경에 따른 개발노력,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의 표준화 노력, 개인정보의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24]은 다음과 같다.

① 암호화 방법이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Trust in cryptographic methods)

② 사용자는 적용되는 법에 맞는 암호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Choice of cryptographic methods)

③ 개인, 사업자, 정보의 요구에 따라 암호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22) 보안과 암호를 논의할 때 흔히 거론되는 것은 SET개념이다. SET은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서 미국 비자 인터내셔널 등이 공동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여 1997년 5월 제 1판의 spec을 발표하였다. 전자결제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실현(EC)의 실현, ETRI, 1999 참조; SET은 보안프로토콜의 일례로 암호화 방안에 관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SET에 비해 SSL 프로토콜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SET은 안전한 프로토콜이기는 하나 SSL 등에 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전자 거래에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SSL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금융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을 경유하지 않는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SSL방식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연구에 SET프로토콜을 중심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금융정보가 누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23) 정진근, 전게논문, 75면.

24)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h*, March, 1997.

(Market driven development of cryptographic methods)

④ 국가적 수준의 암호화 방법을 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Standards for cryptographic methods)

⑤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⑥ 법률적인 접근이 암호화 방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Lawful access)

⑦ 책임 및 키에 대한 접근 여부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liability)

⑧ 국제간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또한 보안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전자시스템이다. 온라인상에서 지급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용카드번호나 구좌번호 등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결제정보가 악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활성화가 전자지급시스템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면, 이것은 지급과정에서의 보안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보안은 네트워크보안과 시스템보안의 두가지로 분류된다. 네트워크보안이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타고 전송중인 자료의 보안을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접속통제를 통하여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시스템 보안이란 컴퓨터 시스템의 OS, 응용프로그램, 서버등의 보안허점을 이용해 해커들이 침입해서 컴퓨터시스템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시스템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것,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파괴,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안기능들은 기밀성(Confidentiality),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부인방지(Nonrepudiation)의 네가지로 요약된다.[25] 여기서 기밀성이란 전달내용을 제 3자가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인증은 정보를 보내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고, 무결성은 정보전달 도중에 정보가

25)최영민, “전자지급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1. 50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부인방지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가지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방법이 암호화기술중에서 비대칭 공개키 암호화방식이다. 그러나 기존의 비밀키 암호화 방식은 인증과 부인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암호화 방식과 인증은 전자지급거래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도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거나,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지만, 주로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보다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이 문제는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있어서 신뢰와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전자지급거래와 관련된 보안문제와 인증구조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전자상거래와 전자인증

전통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여부의 확인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장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비대면 거래인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인감에 해당되는 것이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은 제 2조에서 전자서명의 개념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의 고유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을 인증기술과 관련하여 비대칭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디지털서명 : Digital Signature)으로 분명히 정의하여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26]

광의의 전자서명 방법 중에는 수기서명을 스캐닝한 이미지, 키보드를 이용한 서명,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Password) 등의 방법이 있으나, 전자서명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이다.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은 신원확인 및 무결성 보장의 측면에서

26) 현인보, 전게논문, 51면.

현재까지의 기술 중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만하다고 평가받는 방법으로 수기로 행하는 서명의 기능을 대체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전자서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키와 그 키를 소유한 사람이 일치하여야 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제3자로 하여금 이들의 신원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인증"이라 하고,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인증기관(CA:Certification Authority)"이라고 하며,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원정보와 전자서명검증키가 포함된 "인증서"를 발행하게 된다.[27]

이러한 인증기관은 그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손해배상 등의 문제해결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금력과 신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과 정보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총 제 6장 3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전자서명법의 내용과 용어를 정의하고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인증서의 발급과 효력,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인증서 : 인증서의 발급과 효력,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련한 전자서명생성키의 관리와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보칙으로 외국과의 인증업무의 상호인정과 정부의 보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벌칙으로 전자서명생성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나 인증업무의 위반에 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담당은 그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경우인 공인인증

27) 김동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2003. 8면

기관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비공인인증기관(민간인증기관)을 병존케 하여, 인증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보호를 국가 등이 일정부분 책임지는 부분과 거래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영역에 맡기는 부분의 2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적 체제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증 등에서 공인인증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사용자들이 민간의 인증기관보다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신뢰성있는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국내의 전자서명법은 손해 배상의 범위와 보증에 관하여 초안에 삽입되었던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의 혜택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공인인증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둠으로써 비공인인증기관(민간인증기관)은 사법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나 규제가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전자적인 문서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있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도 결국 사법적 효력이 가장 큰 효력이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인인증기관과 비공인인증기관의 법적 효력 발생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즉 첫째는 유력한 사법인이 인증업무를 하는 경유 규제를 받는 공인인증기관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둘째로 잘못된 인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규제가 없는 비공인인증기관에 자력이 없거나 증거력이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저장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인증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전자서명법을 공인 및 비공인 양자를 동시에 감독,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이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거래는 전자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거래상대방을 만나게 되므로 전자적 원격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원확인이나, 전자문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변조의 위험, 제3자로부터의 정보유

출 내지 분쟁 발생시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 명확한 기술적·법률적 안전성확보 수단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요건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전자상거래의 기술적·법률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자서명과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증은 전자문서의 근원에 관한 것으로, 전자문서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경우에 현금지급기는 인출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은행에 미리 등록해 놓은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인증 및 확인은 실제적인 거래요건과 동시에 법적 요건이 된다. 디지털서명은 전자문서의 인증, 확인성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된다. 전자문서의 수신인은 디지털서명에 의하여 해당문서의 근원 즉, 그 전자문서가 발신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개키와 서명키는 신원인증이 된 서명자와 결합되어 있고 이는 각 서명자에게 유효한 것이므로 그 키는 서명자와 문서를 유효하게 결합시키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서명은 발신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비밀키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것이 추정된다. 또 디지털서명은 발신인이 전자문서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의도로 부가되었다는 것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28)

그러한 보안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전자통신을 통한 네트워크상의 공간 즉, 가상공간(Cyberspace)에서 전자상거래는 종래의 서면을 통하던 전통적 상거래에 비해 경제성, 효율성, 신속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신뢰성있고 간편한 보안관리를 외국의 법안과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법규를 개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에 알맞은 방법을 모색하여 전자상거래의 국제화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28) 정주환, 전게서, 131면.

Ⅲ.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례

1. 영미법계

미국의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는 세계에서 단연 앞서 있다. 1997년 7월 미국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f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여 인터넷 문화와 그 체계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관심분야를 지정하는 한편 각 분야별 현안 문제점과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미국법제는 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r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 NCCUL)에서 통일상법전(UCC : Uniform Commercial Code) 제 2편의 개정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기타 전자상품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규율의 통일, 즉 통일전자거래법(UETA:Unir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 통일전자거래법은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계약법이 아니라 전자기록이나 서명을 유효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적용범위는 모든 서면과 서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전자거래법은 서명에 관한 각 주의 디지털서명법 및 연방의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통일전자거래법은 다만 이러한 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29]

그런데 미연방정부는 연방법인 통일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E-Sign Act)을 2000년 6월 16일 미의회에서 통과시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기업들이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으로 거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혁신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

29) 이대희,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1. 10, 20면.

방 통일전자거래법은 통일전자서명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법인 미국 통일전자서명법 규정에 통일전자거래법의 규정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두 입법이 동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통일전자거래법은 통일전자서명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법이고,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30]

먼저 미국의 전자서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미국의 전자서명법의 입법방향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는데, 하나는 유타주와 같은 포괄적 입법방향을 취하는 경우[31]이고,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최소한의 입법을 한 다음 점차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경우[32]이다.

디지털서명법을 연구해온 미국변호사협회(ABA : American Bar Association)는 1995년 디지털서명 가이드라인(Digital Signature Guidelines)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자서명을 한쌍의 열쇠를 쓰는 방법, 즉 디지털서명을 창설하는데 쓰이는 비밀 키(private key)와 전자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공개키(public key)에 의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참작하여, 미국 유타주가 처음으로 디지털서명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Digital Signature Act, 1995)[33],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캘리포니아주의 디지털서명법(Digital Signature Regulation, 1997), 일리노이주의 전자상거래안전법(Electronic Commerce Security Act,1988)등이 제정되었다.[34]

또한 미국 UCC4A(통일상법전 제4편)에서는 오래전부터 전자통신수단에

---

30) 손태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인터넷법률, 3호(2000. 11.), 71쪽.

31) 워싱턴, 프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캔자스,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버지니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의 주가 해당된다.

32) 애리조나, 뉴 멕시코,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뉴 햄프셔 등의 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33) 유타주의 입법 후 여러 주들이 유타주의 법과 유사한 입법을 하였으며, 유타주 입법은 한국의 전자서명법을 비롯한 외국의 입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이대희, 전게논문, 26면).

34) 현인보, 전게논문, 32면.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며[35],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은 미국내에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수표·어음 등 서면에 의한 지시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위험배분의 기준,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 고지, 거래내역의 서면통지, 분쟁해결 절하 등을 정한 연방법이며,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공표된 레귤레이션 E는 취급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행규칙으로 존재하였다.[36] 이외에도 많은 입법활동이 있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인터넷의 접속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상거래와 같은 소비자보호에 집중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이용확산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2. 대륙법계

1) 독일

독일은 전자상거래와 같은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크 등에 관한 법적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기본계획을 부여하기 위해 독일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멀티미디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6년 12월 독일 정부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 1997년 6월 13일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7월 4일에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37] 이 멀티미디어법은 정식으로는 정보·통신업법(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 IuKdg)이라고 명칭하고 있고, 이하의 몇 가지 법률을 묶은 옴니버스형 법률이라 하겠다.

---

35) 최영민, 전게논문, 113면.

36) 정진근, 전게논문, 29면.

37) 현인보, 전게논문, 34면.

① 전자정보・커뮤티케이션 서비스법

② 전자정보・커뮤티케이션의 데이터 확보법

③ 디지털서명법

④ 저작권법개정법

⑤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문서의 발표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

⑥ 기타에 형법개정법, 경범죄법개정법, 가격표시개정법 등이 있는데 이 중 디지털 서명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독일은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인프라를 정비하고 전자적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신뢰성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법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과 그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조를 만들었다.

독일의 디지털 서명법(Signaturgesetz)은 본인을 인식시키기 위한 증명서로서의 비밀키를 이용하고 디지털 정보를 봉인하여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송신자의 공개되어 있는 키를 이용하여 이것을 여는 것으로 송신자가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공개키의 이용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비밀키로 작성된 디지털 정보에 의한 봉인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연방관서인 정보통신부는 인증기관에 면허를 부여하고, 면허를 받은 인증기관이 디지털 서명의 소유자에 대해 본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인증기관은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 법령이 만족하는 보안을 충족시킴으로써 증명서발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허가증이나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해 본인확인을 해야만 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독일텔레콤, 은행, 상공회의소가 디지털 서명 인증기관으로 되어있고 이 인증기관들은 IC 칩 카드로 서명 또는키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 디지털서명법의 특성은 미국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을 기초로 삼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디지털서명의 유효성 내지는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함으로써 과도기적인 법률형태를 취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위 디지털서명법은 구체적으로 통신기반구조의 효율적 활용, 암호화정책, 전자지급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와 산업보장권, 전자적 권리이전, 인터넷 거래의 무관세 및 조세 균등 보장, 범세계적 규격화 표준화 개발, 공공부문간의 전자적 통신 촉진, 기타 전자거래자문기구의 설치 등 지식의 전달을 지향하고 있다.

EU지역 내 외 국가의 디지털 서명으로 당국에서 증명서의 발행과 공개되어 있는 공개키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독일의 디지털 서명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경우에는 독일의 디지털 서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EU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서명에 관한 EU지침이 준비되고 있고, 이 지령은 독일 디지털서명법과 함께 기본적인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유럽연합(EU)

비교적 유럽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낮은 신용카드 사용률과 언어장벽, 높은 통화요금, 보수적인 소비문화등의 원인으로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거래의 미래 전망과 확산 및 경제성의 중요성을 인지한 EU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정보 보안문제에 관한 회원국 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연합 15개국은 현재 전 세계 상거래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여 전자상거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으며, 회원국과 EU의 주요무역 상대국의 디지털서명에 관한 관행, 회원국 및 EU의 정책 및 현재의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서명법의 법적 문

제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8] 특히 영국, 프랑스등 각 회원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들을 EU 전체의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EU는 세계적인 정보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유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 결과는 1997년 4월 16일 '유럽전자상거래 대응방안(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이라는 보고서로 제시하였다.[39]

EU에서의 전자상거래 법규범의 형성은 1997년 4월 15일 유럽위원회가 네부분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논의와 발전을 거듭한 결과 EU 회원국들 사이에 정보사회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지침은 2000년 7월 17일 관보(Official Journal : OJ)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을 발생하였다. 이러한 EU에서의 전자상거래규범은 미국에 비해 다소 제한적인 자유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점으로 하나 제한된 일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위원회의 직접적인 규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1999년 전자서명공동체골격지침에서는 특히 인증서 내용의 유효성에 책임이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최소책임규칙(minimum liability rules)을 규정하였다. 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태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각 회원국은 인증에 의존하여 발생한 법인 및 개인의 피해에 대한 인증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이 최소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EU는 1997년 VAT지침과 1998년 개인정보보호지침, 1997년 12월 '통신부문의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지침', 1996년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과 1991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지침 등을 마련하여 미래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법규 등을 마련하였다.

---

38) 현인보, 상게논문, 33면.

39)심종석・유병욱・오현석・심갑영,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청림출판,2001, 569면.

3) 일본

일본은 1995년부터 통산성, 우정성등 정부가 주축이 되어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규 마련에 들어갔다.

통산성은 전자상거래환경정비연구회를 설치하여 1995년부터 전자상거래의 환경정비에 관하여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 중간보고서 형식으로 완성되었으며,[40] 법무성도 1996년 7월 전자상거래법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민·상법의 입장에서 검토를 시작하는 등 전자인증제도 및 전자공증제도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1997년까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간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추진 속도도 발달된 정보통신 기반 구조와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느렸다. [41]

그러나 1999년에 이르러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도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3대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고도정보통신사회행동계획의 3대원칙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민간 주도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정부는 민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되 불필요한 간섭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제기관이나 외국과의 거래에 관한 조화와 세계적 표준에 관한 논의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42]

일본의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은 2000년 4월 제정되어 동년 5월 31일 발표되었고,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 제1조에서 "전자서명에 관하여 전자적 기록의 진정한 성립의 추정, 특정인증업무에 관한 공인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전자서명의 원활한 이용을 확보

---

40) 內田 貴, "電子商去來法(1)",*NBL*(No.600),1996.9,38면.

41) 안중호·박철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제 3판)", 54면.

42) 최주선, "전자상거래확산에 따른 국내외의 규범동향과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43면.

하고, 정보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유통 및 정보처리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01년 6월 29일 「전자소비자계약[43]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95호)을 제정 공포하였다. [44]

43) 「전자소비자계약」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電磁的 방법에 의해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을 통해 체결 체결되는 계약으로, 사업자 또는 그 위탁자가 당해 영상면에 표시하는 절차에 따라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송신함으로써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44) http://lovol.net/uploads/ilaw10.hwp

Ⅵ. 전자상거래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1. 전자거래의 기본법의 내용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1999년 2월 28일, 법률 제5834)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인 상거래법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전자거래의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45] 이법은 제1조에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그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여 거래의 공정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본다.[46]

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 및 시기,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 등을 규정하고 명확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컴퓨터 등의 안전성,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 및 표준화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토록 하였다.[47]

---

45) 최주선, 상게논문, 15면.

46) 현인보, 전게논문, 42면

47) 오선아, 전게논문, 26면.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범은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나 OECD, APEC 등 국제협력기구에서는 법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해 기본원칙과 무관세, 개인정보보호, 암호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WTO, UNCITRAL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무역, 법제 분야에 관한 전자거래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자거래 기본법은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년)을 기초로 제정되었다.[48] 그리고 WTO는 상업목적을 위한 인터넷의 상용의 증가로부터 거래를 하는데서 오는 잠재적 이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국제무역의 도구로서 인터넷이 WTO 아래에 편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자거래의 범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범의 수립과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와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49]'을 제정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동향에 힘입어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국제적 흐름을 고려한 전자상거래 개정법이 필요하다고 고려한 결과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2002.6.29)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개정일 : 2002.06.29 제정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4호 전문개정 2002. 6. 29 대통통령 제1765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거래기본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시작된 개정법을 제정하였다. [50]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

보안의 책임 주체는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통신망사업자가 보안에 관해 어떠한 수

48) 손진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현황 과제, 학국비교사법학회 창립4주년 기념 학술대회자료집, 129면.

49) (전자거래분쟁조종위원회 자료실 http://dispute.kiec.or.kr/)

50) http://www.safeprivacy.net/cgi-bin/read.cgi?board=pd...w&y_number=20&nnew=1-

준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는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받아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통신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5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개키 기반구조와 암호화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이 거래계에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 때 암호화 내용은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 정책에 대한 OECD의 지침은 암호화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암호화 방식의 선택, 시장환경에 따른 개발노력,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의 표준화 노력, 개인정보의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5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암호화 방법이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Trust in cryptographic methods)

② 사용자는 적용되는 법에 맞는 암호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Choice of cryptographic methods)

③ 개인, 사업자, 정보의 요구에 따라 암호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Market driven development of cryptographic methods)

④ 국가적 수준의 암호화 방법을 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Standards for cryptographic methods)

⑤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⑥ 법률적인 접근이 암호화 방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Lawful access)

⑦ 책임 및 키에 대한 접근 여부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liability)

⑧ 국제간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또한 전자지급스템은 보안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온라인상

---

51) 정진근, 전게논문, 75면.

52) OECD, op. cit., March, 1997.

에서 지급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용카드번호나 구좌번호 등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결제 정보가 악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활성화가 전자지급시스템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면, 이것은 지급과정에서의 보안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보안에서 4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이다. 먼저 기밀성이란 전달내용을 제 3자가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인증은 정보를 보내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고, 무결성은 정보전달 도중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부인방지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암호화기술중에서 이러한 네가지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방법이 비대칭 공개키 암호화방식이다. 기존의 비밀키 암호화 방식은 인증과 부인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암호화 방식과 인증은 전자지급거래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도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거나,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지만, 주로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보다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이 문제는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있어서 신뢰와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전자지급거래와 관련된 보안문제와 인증구조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이 열린 구조이고 자료의 공개는 주로 개방형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암호화 방법을 통한 네트워크상의 보안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규모의 전자상거래가 급부상하는 것과 발맞춰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53조)

첫째,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에 관한 업무

둘째,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업무

셋째,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넷째,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다섯째,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이상과 같은 법적 조항을 두어 국제기구와의 상호 협력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53]

3. 전자서명과 인증제도

현실세계에서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인장이라면 인터넷상에서 인장에 해당되는 것이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54]라고 할 수 있다. 전자서명이란 보내는 내용을 메시지요약 한 것을 보내는 사람의 개인키로 암호화 한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은 메시지를 요약하기 전의 원래의 정보와 함께 전달되게 되는데, 이 원래의 정보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를 모두 이룰 수 있다.

가령 전자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거래업체에 인터넷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 해당 서류에 전자서명을 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전자인증서(Digital Certification)를 첨부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현재 미국의 베이사인 등의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효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정비중에 있다.[55]

즉, 전자서명이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저자서명키(전자서명생성키)와 그 키(전자서명 검증키의 쌍)를 소유한 자와 일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하는 행위을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한 전자상거래의 보장과 개인 및 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고 마지막으로 거

53) 윤연근・김형진・신문걸, 전게서, 272면.

54) 우리나라 서명법은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2호).

55) 이노우에 요시유키(박명섭, 조종주, 한낙현 옮김),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조, 부키, 2000,10, 199면.

래 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인증의 기능은 상대방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기능과 거래 내용등을 확인하는 기능과 거래 상대의 신용능력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인증기능 가운데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시급하고,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인증, 즉 신원인증기능이다. 현재 공개키 암호화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은 이러한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것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신뢰할만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상거래시 필요한 상업서류로서 기명날인을 요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서는 서명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전자상거래에서는 송신자의 신원을 암호화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공회의소(ICC), OECD, EU 등 국제기구는 공개키기반을 전자거래의 인증·무결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제도확립을 위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독일,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싱가포르, 인도, 우리나라도 공개키기반의 디지털서명법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개키기반구조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어진다. 기밀성을 위한 암호의 이용은 그에 따른 폐해방지등을 위해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암호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과거 국가보안차원에서 통제되었던 암호기술 및 암호장비의 수출·수입등이 이제는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별로 그 입장에는 차이가 있지만, 암호기술에 대한 규제완화가 전반적인 추세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선진 민주국가 중 가장 강력하게 암호기술의 수출·수입 및 이용을 통제하였으나 최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정보화촉진 기본법, 대외무역법, 보안업무규정,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통하여 암호기술 이용에 관한 법령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유럽은 '전자서명 입법지침(Directive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matures)'을 1999년 12월 채택하여 200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지침 전자서명법(법률 제5791호, 1999.2.5.)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자서명이 행해진 모든 문서에 적용되어진다. 전자서명법은 정보통신부에 의해 마련되었고, 규율대상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한정되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56]

첫째, 인증기술은 공개키 암호화 방법을 이용한 디지털 서명이 이용된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4조)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만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국가가 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3조)

셋째, 인증업무의 지속성 및 적정성 보장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증실무준칙의 신고, 인증기관의 업무 휴·폐지 등 인증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6조, 제10조)

넷째, 인증법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서의 발급이다. 인증업무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인증서에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증서의 발급, 효력정지,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 15조, 제 18조)

---

56) 김종칠·이진우,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 인증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국제상학(제 15권 제 1호), 2000, 5. 한국국제상학회편.

다섯째,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사용의 제한이나 누설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서명법[57]은 제 2조 2호에서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의 효력과 관련하여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당해 명의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3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실세계에서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인장이라면 인터넷상에서 인장에 해당되는 것이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58]라고 할 수 있다. 전자서명이란 보내는 내용을 메시지 다이제스트한 것을 보내는 사람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은 메시지를 다이제스트하기 전의 원래의 정보와 함께 전달되게 되는데, 이 원래의 정보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를 다 이룰 수 있다.

가령 전자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거래업체에 인터넷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 해당 서류에 전자서명을 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전자인증서(Dihital Certification)를 첨부한다. 이어서 거래업체가 인증기관을 통해 전자서명 및 전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그것이 곧 당사자 여부를 확인한 것이 된다. 이 방법은 해외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식화 되어 있다. 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증명하는 것을 전자인증이라 하는데, 현재 미국의 베이사인 등의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57) 본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의 활성화, 전자정부의 구현 및 전자화폐 이용 등을 위하여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및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 공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8) 우리나라 서명법은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2호).

높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효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정비중에 있다.[59]

즉, 전자서명이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저자서명키(전자서명생성키)와 그 키(전자서명 검증키의 쌍)를 소유한 자와 일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전저서명 생성키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하는 행위을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한 전자상거래의 보장과 개인 및 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고 마지막으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인증의 기능은 상대방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기능과 거래 내용등을 확인하는 기능과 거래 상대의 신용능력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인증 기능 가운데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시급하고,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인증, 즉 신원인증기능이다. 현재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은 이러한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것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신뢰할만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상거래시 필요한 상업서류로서 기명날인을 요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서는 서명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전자상거래에서는 송신자의 신원을 암호화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공회의소(ICC), OECD, EU 등 국제기구는 공개키 기반을 전자거래의 인증·무결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제도 확립을 위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독일,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싱가포르, 인도, 우리나라도 공개키 기반의 디지털서명법체계를 갖추고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개키 기반의 구조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추진분과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기밀성을 위한 암호의 이용은 그에 따른 폐해방지 등을 위해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암호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과거 국가

59) 이노우에 요시유키(박명섭, 조종주, 한낙현 옮김), 전게서, 200면.

보안차원에서 통제되었던 암호기술 및 암호장비의 수출·수입 등이 이제는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별로 그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암호기술에 대한 규제완화가 전반적인 추세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선진 민주국가 중 가장 강력하게 암호기술의 수출·수입 및 이용을 통제하였으나 최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정보화촉진 기본법, 대외무역법, 보안업무규정,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통하여 암호기술 이용에 관한 법령을 마련해 놓고 있다.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터넷보급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여러 방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는 매우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자거래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리는 이에 대응하기 이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 중 문제점으로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자거래 계약의 유효성의 인정기준

전자거래의 이용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계약체결의 과정상 계약의 체결은 사업자에 의해 주도되고, 소비자들은 계약의 내용을 따져보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컴퓨터의 조작에 익숙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수로 클릭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통신 장애로 클릭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클릭한 것이 2회 주문으로 처리된 경우나 대금결제 화면에서 더블 클릭한 것이 이중으로 결제되어 버린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문을 마친 순간에 주문 내용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고 정정할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주문이 승인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전자대금결제에 대하여도 유사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민법의 규정에 위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컴퓨터정보에 의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전문적인 규정이 필요

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과 다른 컴퓨터 정보거래법을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전자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전자거래를 위한 입법을 함으로써 전자거래계약상의 모든 절차들을 표준화하고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을 경감토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가급적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의 무조건적 청약철회나 반품허용은 조작실수나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사후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결국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고려하여 청약철회 가능기간이나 대상상품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인증서의 발급기관

전자서명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은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직원 및 대리인에 관한 실무규칙을 확립하여야 하고, 인증서의 발급·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중요사실을 기록하여 적절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인증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증기관의 자격, 허가, 업무 범위, 책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서명의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데 전자공증이란 전자적으로 작성된 계약서 등이 특정인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공증하고, 여기에 확정일부를 부가하여 전자적인 기록의 형태로 공증증서를 작성, 보관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공증은 전자사문서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공증하는 제도이다.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은 주로 정보의 작성자를 확인하는데 비해 전자공증제도는 정보의 내용의

소실과 개서에 대비하여 정보의 교환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서명과 전자인증만으로는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소실 등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작성된 정보에 관한 기록을 보관시키고, 그에 따라 후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정보의 존재·내용이 증명되어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면에 의한 거래 등에서 이용되고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현행의 공증제도를 기초로 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증 서비스를 전자문서(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증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60] 그러나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전자공증에 관하여 전자공증제도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 전자공증기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전자공증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첫째, 전자공증제도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도적 발전과 전자공증의 수요를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공증기관에 대해서는 공증인에게 맡기는 방법과 전자인증기관 등에게 전자공증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공증의 효력은 전자공증시의 확정일부 부여방법과 전자공증증서의 작성, 전자문서의 보관 및 증명방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거래에 있어서 공증인의 공증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과 같이 전자상거래에서도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과 공증의 장점을 살려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0) 이호용, “일본의 전자공증관련 법제동향”, 인터넷법률, 6호(2001.5.), 196면.

3.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전자상거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거래상대가 본인인가를 확인해야 하고, 거래정보의 부당한 취득을 방지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거래의 당사자가 본임임을 인증을 통해 증명하고, 거래내용에 부정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기밀성을 보장하는 암호화와 다른 사람에 의한 개조 또는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나 내용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전자서명 기능 등의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다. 암호기술은 해커들이 전송되는 정보와 데이터를 입수하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변형시켜 원래의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군사, 외교분야에 널리 사용되어왔던 암호기술은 현재 인터넷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암호화와 복호화가 같은 관용 암호방식과 사용되는 키가 서로 다른 공개키 방식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개키 기술은 관용 암호방식의 가장 큰 단점인 키 분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최근에 잘 사용되고 있다.

Ⅵ. 결론

전자거래의 이용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계약체결의 과정상 계약의 체결은 사업자에 의해 주도되고, 소비자들은 계약의 내용을 따져보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컴퓨터의 조작에 익숙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수로 클릭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통신 장애로 클릭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클릭한 것이 2회 주문으로 처리된 경우나 대금결제 화면에서 더블 클릭한 것이 이중으로 결제되어 버린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문을 마친 순간에 주문 내용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고 정정할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주문이 승인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전자대금결제에 대하여도 유사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절차들을 표준화하고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을 경감토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가급적 그러한 절차를 준수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의 무조건적 청약철회나 반품허용은 조작실수나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사후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결국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고려하여 청약철회 가능기간이나 대상상품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서명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은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직원 및 대리인에 관한 실무규칙을 확립하여야 하고, 인증서의 발급·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중요사실을 기록하여 적절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인증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증기관의 자격, 허가, 업무 범위, 책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서명의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와 각국의 전자상거래의 입법례와 우리나

라의 전자상거래의 법적 규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보안과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봄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보안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법규의 개선방향은 전자상거래를 정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하여 이끌어야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법률조항의 중복 및 상충요소를 선별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법률의 통일을 기하여야 하겠다. ①저자서명의 통일 ②명칭 통일의 필요성 '디지털 서명', '디지털 전자서명'등 표현이 같은 의미를 전달할지라도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증에 있어서는 다양한 현행법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 상법에서 언급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독특한 측면이 있으나 기존의 법규를 통해 조화로운 규정이 필요하겠다. 전자인증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공증제도'이다. 공증이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으로서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공증인 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공증업무를 법무법인,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공증인 등만이 취급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자인증제도의 도입은 법률적 혼란을 우려할 수 있다. 즉, 전자 인증은 전자거래법 및 전자서명법이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신분 및 시간까지 확인 가능한데 공증의 경우 공증업무 수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시급한 법제 정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선방안은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어떤 전자문서의 송신이 발신에 해당되고, 어떤 것이 승낙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전자적 문서를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111조에 따라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의 성립장소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는 성립장소가 문제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도달지가 계약의 성립 장소가 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는 정부입장과 민간부문에서 신속한 법률개정과 보완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법안을 제정하여야 하고, 전자상거래는 정부주도형보다 민간주도형이 되었을 때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가 서로 합심해서 법안을 보안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한 법안의 재정비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공청회와 세미나를 주관하여 현재의 상황과 국내외의 동향을 비교하면서 적용해야할 분야를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강력한 법적통제를 위하여 민간부분에 대한 선택적 간섭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거래상대가 본인인가를 확인해야 하고, 거래정보의 부당한 취득을 방지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거래의 당사자가 본임임을 인증을 통해 증명하고, 거래내용에 부정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기밀성을 보장하는 암호화와 다른 사람에 의한 개조 또는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나 내용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전자서명 기능 등의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다. 암호기술은 해커들이 전송되는 정보와 데이터를 입수하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변형시켜 원래의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군사, 외교분야에 널리 사용되어왔던 암호기술은 현재 인터넷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암호화와 복호화가 같은 관용 암호방식과 사용되는 키가 서로 다른 공개키 방식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개키 기술은 관용 암호방식의 가장 큰 단점인 키 분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최근에 잘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거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보안기술과 전자인증기술을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전자인증 제도를 확립함으로서 보다 더 안전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미래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되어있는 국내 경제 발전과 수출소득을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Ⅰ. 국내문헌

김동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2003.

김종칠・이진우.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 인증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국제상학.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999.

문희철・심상렬. **무역자동화와 EDI**. 무역경영사. 1988.

손진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현황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4주년 기념학술대회자료집.**

손태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인터넷법률. 3호**..2000. 11.

심종석・유병욱・오현석・심갑영.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청림출판. 2001.

안중호・박철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제 3판)**.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윤연근・ 김형진・신문걸. **전자상거래관련법규**. 경기도 파주. 기한제. 2003.

이노우에 요시유키(박명섭・ 조종주・ 한낙현 옮김).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조.** 부키. 2000.

이대희.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2.

이호용. 일본의 전자공증관련 법제동향. **인터넷법률. 6호**. 2001.5.

전자기본법의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정주환. **전자상거래법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한웅길. 전자상거래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 **동아법학. 제 2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Ⅱ. 논문

신승보. **전자상거래의 성립 단계에서의 법률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유동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과 전자적 이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2001.

전현우. **전자상거래상활용상의 법적 제문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정진근. **인터넷 전자거래를 위한 지급결제수단의 법적 성격 및 정비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0.
최영민. **전자지급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1.
최주선. **전자상거래확산에 따른 국내외의 규범동향과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현인보.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

Ⅲ. 외국문헌

內田 貴. **電子商去來法**. *NBL*(No.600). 1996.
松本恒雄. **新版註釋民法**. 有斐閣. 1996.
Michael N. *Gualtieri. Turning the EC Vision into Reality.* EDI World. November 1996.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March. 1997.

Ⅳ.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www.netsarang.org/technote/read.cgi?board=pd...w&y_number=20&nnew=1- (NETSARANG:컴퓨터.인터넷.정보과학)
http://lovol.net/uploads/ilaw10.hwp(정보공유라이선스)
http://www.safeprivacy.net/cgi-bin/read.cgi?board=pd...w&y_number=20&nnew=1-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